

# 부산장안지구 중흥S-클래스

## 청약유의사항 안내

### ■ 민간 사전청약 관련 유의사항 안내

- ① 본 아파트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민간에서 사전청약 방식으로 사전당첨자를 선정하는 '민간 사전청약' 아파트로 민간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에 명시된 추정 분양가격, 추정 본 청약 시기 및 입주예정일 등은 향후 본 청약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②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전체 주택(공공·민간사전청약, 분양주택,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)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, 2건 이상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(예비입주자 지위 무효)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(단,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 가능하며 특별공급 사전당첨자로 선정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)
- ③ 본 아파트는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로 별도의 사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.
- ④ 본 아파트는 입주자저축을 사용하여 사전당첨자를 선정하는 주택으로 사전당첨시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며, 향후 사전당첨자 지위포기 또는 부적격 사전당첨자 판명 등 계좌부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된 입주자저축 부활이 가능합니다. (단, 부적격 사전당첨자의 경우 동규칙 제58조의2에 따라 부적격 사전당첨된 주택의 사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다른 분양주택(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을 포함)의 입주자(사전당첨자)로 선정될 수 없음. (공공시행 사전청약 신청은 가능))
- ⑤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주체의 적격 여부 확인을 거친 후 규칙 제58조의4에 따른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이때 별도의 계약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. 향후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전 시행사(사업주체) 개별안내 등을 통해 본 청약에 대한 최종 계약의사 확인을 진행할 계획이며, 본 청약 의사를 확정된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당첨자와 함께 동호수배정을 위한 추첨 후 최종 공급계약을 체결합니다.
- ⑥ 사전당첨자 신청자격과 선정방법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기준 『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』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주택 공급방법을 따릅니다. 다만, 제4조제6항 및 제34조에 따른 해당지역 우선공급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더라도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하며, 이 경우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 (거주기간 미충족시 사전당첨 취소)
- ⑦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세대 내 주택 수는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, 세대 내에서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는 경우 사전당첨이 취소됩니다.
- ⑧ 사전당첨자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사전당첨자로 관리되며, 동 규칙 제58조의5에 따라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사전당첨자 지위에 있는 동안 다른 분양주택 및 분양전환임대주택의 입주자(민간 사전당첨자,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예약자를 포함)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.
- ⑨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의 지위는 최종 공급계약 의사 확인기간(본 청약 입주자모집승인신청일로 부터 15일 전부터 7일 전)까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으며, 지위 포기 시 사전당첨자에서 삭제되고 해지된 입주자저축은 부활이 가능합니다.(단, 사업주체에서 주택 청약 업무수행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지위 포기자 명단을 통지한 후 실제 당첨자 명단 삭제 및 계좌부활까지 약 3~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.)
- ⑩ 사업주체는 사전당첨자의 최종 공급계약 의사 확인을 위해 분양가를 포함하여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안 중 확정된 내용(입주예정일, 세대수 등)을 제공하고, 사전당첨자는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기간 내에 동의 /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하며(기간 내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경우 거부한 것으로 간주), 그 이후에는 최종 공급계약 의사를 철회 / 변경할 수 없습니다.
- ⑪ 최종 공급계약 체결에 동의한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재당첨제한, 특별공급 횟수 제한,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, 향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 지역내 1순위 청약신청 제한 등 본 청약 당첨자와 동일한 각종 청약제한을 적용 받게 됩니다.(실제 최종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)
- ⑫ 금회 사전공급계약 이후 미분양·미계약, 사전당첨지위 포기 및 부적격 사전당첨 등으로 인한 잔여물량은 향후 본 청약 공고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.